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5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업무 위탁근거 규정	3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근거 규정	8
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및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7.
3. 회부연월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 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제20조의3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업무 위탁근거 규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 2제7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 ⑥ (생략)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설치·운영하거나</u>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1)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화 시스템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이력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인증정보 및 특허정보 등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자료 구성 내용

(단위: 건)

구 분	관리항목	비 고
합 계	202	-
지원이력정보	43	· 지원연도, 기업현황,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을 작성
기업기본정보	25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업종, 주요생산물, 기업규모 등을 작성
기업재무정보	37	· 자본금, 매출(수출)액, 영업이익, 상시근로자 수 등을 작성 * 국세청, KED/NICE에서 자료를 수집
사업정보	55	·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부처/기관에 대한 사항을 작성
인증정보	19	· 기업이 보유한 인증정보(분야, 번호, 유효기간) 등을 작성 * 산업부에서 자료를 수집
특허정보	23	· 기업이 보유한 특허정보(명칭, 번호, 등록일자) 등을 작성 * 특허청에서 자료를 수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1월말 현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약 508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보 등(지원사업명, 지원금액, 과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사업간 유사·중복성 평가, 기업별 지원 한도 파악·중복수혜 여부 확인, 지원성과 분석 등을 위한 정책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함.

[표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관리정보 현황(2010년 ~ 2025년 1월 말)

구 분	사업수 (개)	지원건수 (건)	지원업체수 (개사)	지원금액 (억원)
중앙행정기관	729	28,668,625	4,890,657	10,061,106
지방자치단체	1,782	3,487,365	1,615,380	1,302,975
합 계	2,511	32,155,990	5,082,730	11,364,081

주: “사업수”는 종료사업까지 포함한 누적 사업수를 뜻하고, “지원업체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한 업체수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현행법 제20조의2제7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러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²⁾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³⁾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로 지정(2013년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 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것
-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도)한 후 2025년 3월말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경우 정보시스템 변화 대응 및 기업 DATA 정보 관리기술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⁴⁾하였다는 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⁵⁾.

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와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담조직(9명)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함.

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출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또한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의 경우 국회 지적⁶⁾에 따라 2024년부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비목이 변경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사업위탁 근거가 없어 조달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공모 결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외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여전히 동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중으로, 사업공모 절차 진행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정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공모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동 사업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행중인 전문기관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상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145p.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근거 규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 관련 업무(이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라고 함)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법 제20조의3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이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한 729개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1,782개 지원사업 등 총 2,511개 사업에 달함.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⁸⁾.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⁹⁾을 전담기관으로 지정(2019년도)

거처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9)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 후 2025년 6월말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¹⁰⁾.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제3항¹¹⁾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수행결과로 도출된 효율화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성을 지닌 책임있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요약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0)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전담조직(석·박사급 인력 19명)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 성과평가, 사전협의, 만족도 조사 업무 등을 수행(2019~)하고 있다고 함.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 효율화 업무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업무 자체의 공공성을 감안한 수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이해됨.

법률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그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해당 업무수행 체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정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인력, 설비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미 전담조직을 구성(석박사급 인력 19명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¹²⁾¹³⁾을 감안한

12) 특정한 민간기관을 수탁기관으로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나머지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과 비교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견(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628.)도 있음.

13)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법적 업무의 안정적 수탁수행을 위해 일자리평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기본법」 제40조제1항), 재정사업자율평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와 유사하게 수행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동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중소기업연구원 운영 및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개정안은 중소기업연구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안 제25조의2제4항)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가로 규정(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④ 정부는 연구원의 <u>운영</u>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u>출연</u>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u><신설></u>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④ ----- <u>운영 및 사업</u> ----- <u>출연</u> <u>한다.</u> ⑤ ----- -----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u>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규제자유구역특구제도 운영’ 등 8개 사업(2025년도 예산 기준 131억 4,000만원)으로 파악됨.

[표 3] 중소기업연구원 정부지원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2025년
□ 정부지원사업	17,526	13,027	△4,499	13,140
• 중소기업연구원 운영(보조)	7,328	6,595	△733	6,712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보조)	3,345	4,045	700	3,799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 운영*(위탁)	460	460	-	425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탁)	4,205	1,233	△2,972	1,215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보조)	694	694	-	709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위탁)	621	(일몰)	△621	-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위탁)	873	(이체)	△873	-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위탁)	-	-	-	280

주: * 보조 → 위탁사업 변경: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의 경우 2024년도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 운영’의 경우 2025년도부터 변경

* 위탁 → 보조사업 변경: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경우 2025년도부터 변경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 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같이 중소기업연구원 운영 및 고유사업¹⁴⁾

14)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 4의2.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의 방식으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규제자유구역특구제도 운영’과 같이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제4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이 모두 출연의 방식이 아닌 보조의 방식으로만 정부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 사업추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의견이 있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출연금의 경우 집행 잔액을 이사회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자수입 등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연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관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보조 방식보다 출연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또한 보조금 등 정부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된 비리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 민간단체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같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감시 및 이사회 등의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예산집행상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사업의 경우 기관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일반보조사업의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어 3년마다 실시되는 보조금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또는 예산 삭감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출연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임¹⁵⁾.

[표 4] 정부출연금과 정부보조금의 비교(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출자료)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정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일반 법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출연	필수 요소 아님
용도 지정 여부	-기관운영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않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 -사업출연금: 사용 용도가 지정됨	반드시 사용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의 재량 여지 없음
집행 잔액	자체 수입	국고 반환
이자 수입	자체 수입	국고 반환
관리 체계	자율 관리 (주무부처 및 감사원 감사 대상)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주무부처 및 감사원 감사 대상)
기타	재정자율사업 평가 대상	3년마다 보조사업 존치 여부 평가(보조금 일몰제)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의견 제출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그리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같은 수탁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장기간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¹⁶⁾임.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안 제25조의2제4항 중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출연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기금에 대한 출연 또는 운영 경비에 대한 출연을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둔 입법례가 없지 않으나 예산의 경직적 편성 및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연할 수 있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¹⁷⁾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를 신설하는 부분은 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가 안 제25조의2제4항과 결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의견 제출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17)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454.

위탁받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출연의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이라는 특정한 재정지원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출연금 편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규정¹⁸⁾ 취지와 부합하는지¹⁹⁾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보조나 민간위탁에서 출연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 개정에도 동의하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지급 방식을 보조에서 출연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부출연연

18)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9)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함.

구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의 출연의무 조항은 없으므로²⁰⁾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3

2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